

## 결 정

2018 - 2013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 주 문

**스포츠경향** 2017년 12월 19일자 8면 「식약처 의약품 비누형·크림형/5분후 씻고」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2월 19일자 12면 「식약청 비누형·크림형/5분후 씻고」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들은 아토피 가려움 등에 좋다는 자연 산약초 한방재를 선전하는 광고이지만 광고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고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 게다가 해당 제품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식약처 의약품으로 선전하면서 아토피 건선 각질 탈모 비듬 무좀 습진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위 광고와 같은 통신 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 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     |     |     |     |
|-----|-----|-----|-----|
| 위원장 | 김용담 | 김용담 | 김용담 |
| 위원  | 정승호 | 정승호 | 정승호 |
|     | 장명국 | 장명국 | 장명국 |
|     | 이동현 | 이동현 | 이동현 |
|     | 장인철 | 장인철 | 장인철 |
|     | 강희  | 강희  | 강희  |
|     | 김영모 | 김영모 | 김영모 |
|     | 박현갑 | 박현갑 | 박현갑 |
|     | 박미경 | 박미경 | 박미경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